

『2017년도 특허청 업무계획』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국가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2017. 1.



특 허 청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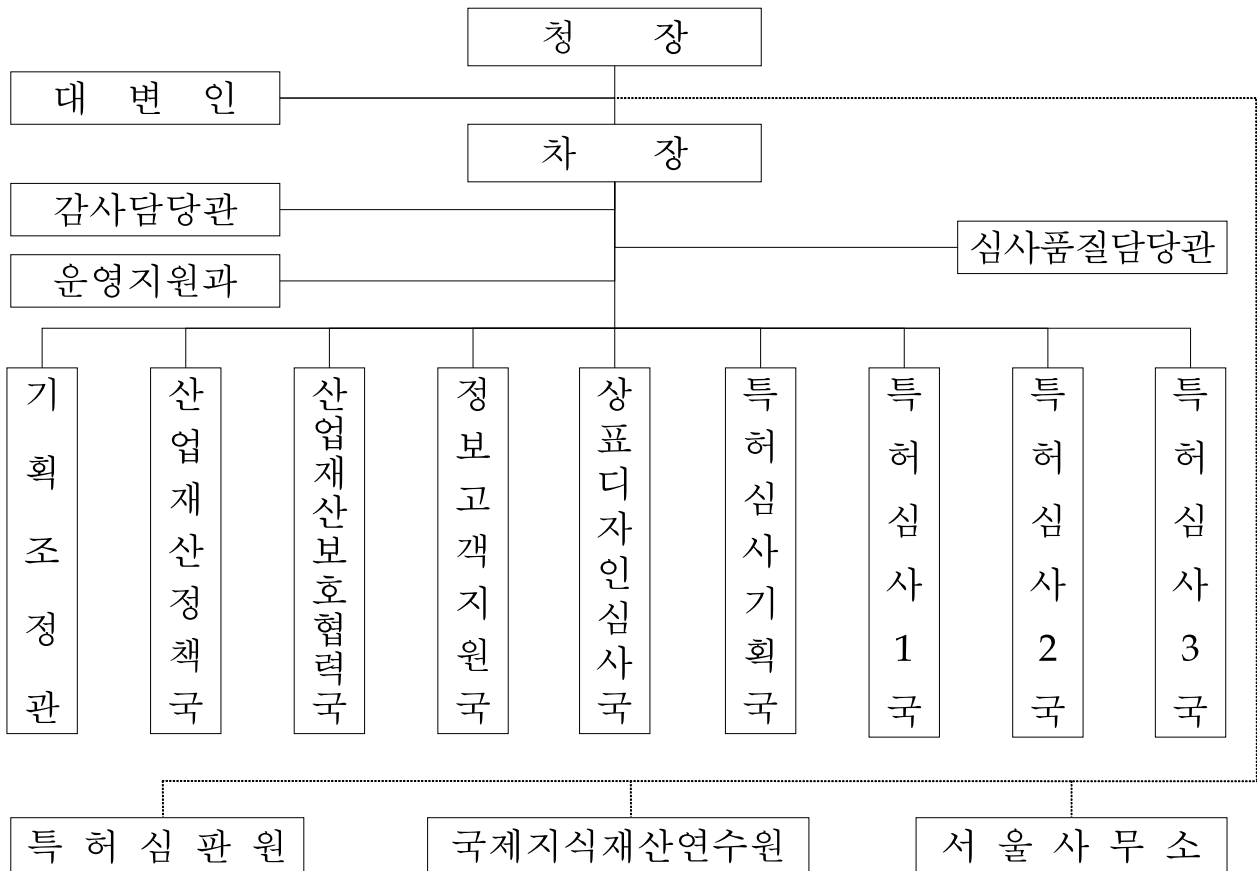
I . 기관 현황	1
1. 조직 및 정원	1
2. 예산	2
II . 지난 4년간 주요 추진성과	3
III . 2017년도 정책여건 및 추진방향	7
IV .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	10
1. 신뢰받는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	10
2. 지식재산으로 새로운 시장 및 일자리 창출	14
3. 지식재산 보호 강화를 통한 기업 혁신 지원	20
4. 미래를 준비하는 지식재산 생태환경 조성	24
V . 분기별 추진계획	28
〈붙임〉 소관 법률	32

I. 기관 현황

1 조직 및 정원

◆ 특허청은 중앙행정기관 중 유일한 책임운영기관

□ (조 직) 1관 8국 52과 15팀, 3소속기관



□ (정 원) 총 1,592명(본청 1,392명, 소속기관 200명)

(‘16. 12월말 기준, 명, 괄호는 현원)

구 분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3·4~4급	4·5~5급	6급이하	관리운영	계
계	1(1)	23(23)	98(95)	1,072(1,080)	354(337)	44(47)	1,592(1,583)
본 청	1(1)	10(10)	53(53)	985(992)	307(290)	36(38)	1,392(1,384)
특허심판원	-	12(12)	41(38)	75(75)	16(17)	-(-)	144(142)
연 수 원	-	1(1)	3(3)	9(10)	16(15)	4(4)	33(33)
서울사무소	-	-	1(1)	3(3)	15(15)	4(5)	23(24)

* (심사관) 998명(일반직 896명(4·5~5급 842명, 6급 54명), 전문임기제 102명)

* (심판관) 95명(4급 40명, 4·5급 55명)

◆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가 적용되어 100% 자체수입으로 세입 충당

□ '17년도 세입·세출예산은 5,553억원('16년도 대비 5.7% 증가 / 순계기준)

○ (세 입) 수수료 수입 4,818억원, 수수료 외 수입(전년도 이월금 등) 734억원

○ (세 출) 지재권의 창출·보호·활용을 위한 주요사업비 2,614억원, 인건비 1,278억원을 포함한 기관운영경비 1,442억원 등

< '17년도 예산 현황 >

(백만원, %)

구 분		'16예산(A)	'17예산(B)	증감(B-A)	증가율
합 계		525,262	555,293	30,031	5.7
세 입	○ 수수료 수입	458,720	481,849	23,129	5.0
	○ 수수료 외 수입	66,542	73,444	6,902	10.4
세 출	○ 주요사업비	263,331	261,425	△ 1,906	△ 0.7
	▪ 심사·심판서비스 제공	80,620	85,587	4,967	6.2
	▪ 지식재산 창출기반 강화	95,965	92,383	△ 3,582	△ 3.7
	▪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 촉진	47,036	46,571	△ 465	△ 1.0
	▪ 지식재산행정 정보화	35,284	32,320	△ 2,964	△ 8.4
	▪ 지식재산행정 종합지원	4,426	4,564	138	3.1
	○ 기관운영경비	143,243	144,173	930	0.6
	○ 공공자금 관리기금 예탁금 등	118,688	149,695	31,007	2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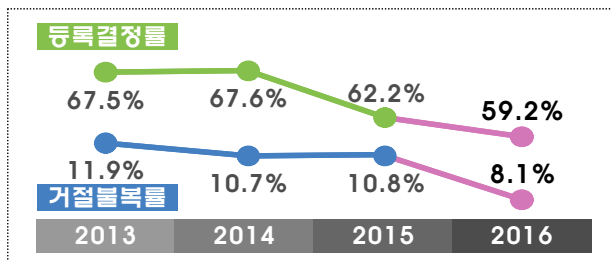
II. 지난 4년간 주요 추진성과

심사·심판 품질 제고 및 적시성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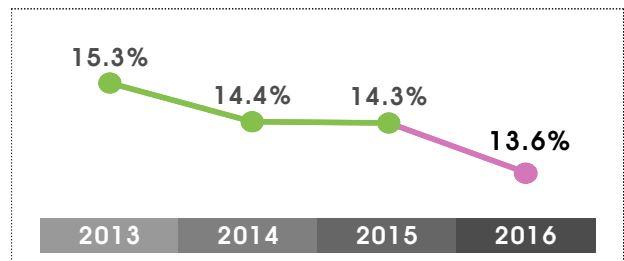
- (품질 제고) 현장 소통 및 인력 확충으로 고품질 서비스 제공
 - '국가 특허심사 경쟁력 강화 방안('14.3)', '특허 심사·심판 제도 개선방안('15.4)' 등 심사품질 제고를 위한 정책 마련·시행
 - 선진 특허분류 체계를 전면 도입('15.1)하고, 산업현장과 소통·협력하는 공중심사를 실시('16.1)하여 심사의 신뢰성 제고
 - 심사·심판 인력증원과 인력운용 효율화를 통해 고품질 심사·심판을 위한 인적 기반 확충

* 최근 4년간 심사관 55명 및 심판관 7명 증원, 전문임기제 심사관 102명 임기 연장

< 특허 등록결정률 및 거절불복률 >



< 심결취소소송 제소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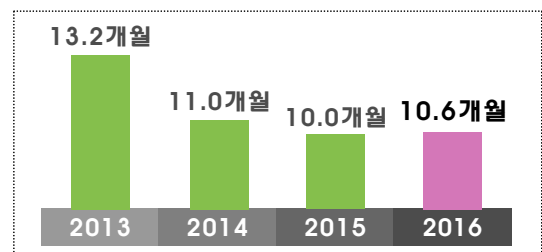


- (적시성 확보) 신속한 처리로 적시 권리화 및 분쟁해결 지원

- 심사·심판 처리기간을 선진국 수준으로 유지하여 조기 권리화 및 신속한 분쟁해결 지원

* 분쟁 중인 사건은 보다 신속히 처리하는 '패스트 트랙' 심판제도 도입('15.11)

< 특허심사 처리기간 >



- (특허심사서비스 수출) 중동지역 등으로 특허행정 한류 확산

- 아랍에미리트(UAE) 특허심사 대행('14.2, 연간 1,000여건 / 건당 1,300불) 및 한국형 특허정보시스템 수출('16.2, 450만불)

지식재산 창출 지원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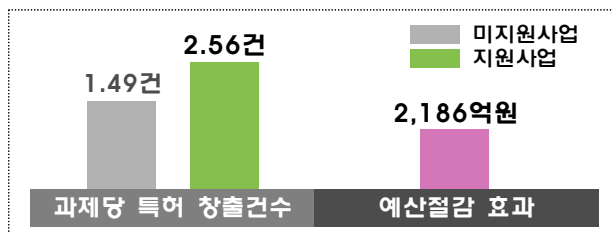
□ (IP-R&D) 지식재산-연구개발 연계 지원으로 우수특허 창출

○ 정부 R&D 기획·선정에서 성과관리까지 쏙 단계에서 특허정보 활용을 지원하여 중복투자 방지 등 R&D 효율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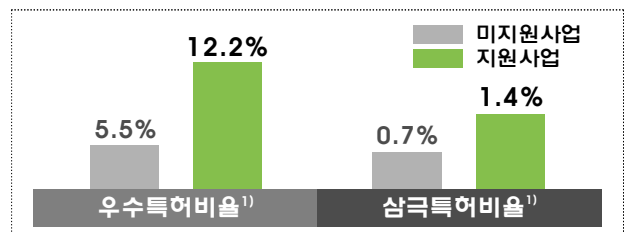
○ IP-R&D 연계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고품질 특허 창출 역량 제고

* IP-R&D 연계 지원(과제) : ('13) 158 → ('16) 203

< 정부 R&D 특허동향조사 성과('1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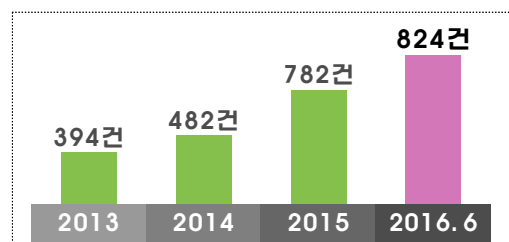
< 중소기업 IP-R&D 성과('13~'15) >



□ (표준특허) 표준특허 창출 역량 강화로 세계 5위권 진입

○ 범부처 표준특허 창출 연계체제를 구축하고, 표준화 진행단계별로 특허전략을 밀착 지원하여 우리기업의 표준특허 확보 지원

< 우리나라 표준특허 보유현황²⁾ >



□ (IP 강소기업) 지식재산 중심의 글로벌 강소기업 성장 지원

○ 맞춤형 지원을 통해 유망 중소기업을 IP 스타기업으로 육성

* IP 스타기업(누적, 社) : ('13) 619 → ('16) 1,166

○ 전국적으로 IP 창조 Zone^{*}을 설치하고,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내에 특허지원창구를 운영하여 아이디어의 손쉬운 권리화 지원

* ('14) 강원·부산 등 4개 권역 → ('15) 인천·전북 추가 → ('16) 충남·제주 추가

1) 우수특허비율 : 특허분석평가시스템(SMART3)의 9등급 평가결과 중 상위 3등급 특허의 비율

삼극특허비율 : 국내 등록 특허와 동일 내용의 발명이 미국·유럽·일본 특허청에 동시 출원된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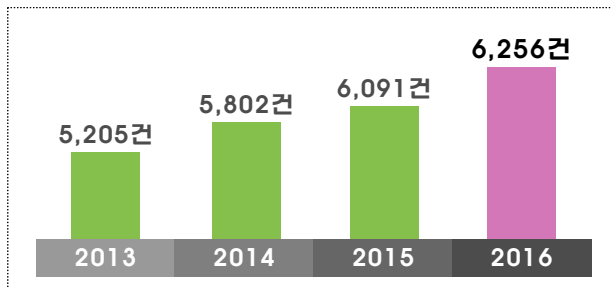
2) 세계 3대 국제 표준화 기구(ISO·IEC·ITU)에서 제정한 국제표준에 대해 선언된 표준특허

지식재산 보호 실효성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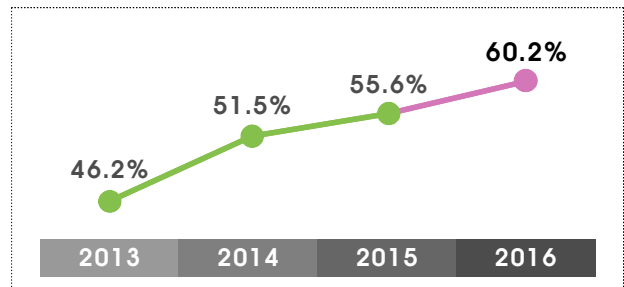
□ (국내 IP 보호)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 기반 강화

- 특허소송 전문성을 강화하고, 소송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해 특허소송 관할집중 제도 도입(민사소송법·법원조직법 개정, '15.11)
- '위조상품 유통 근절 종합대책('14.12)' 및 범부처 '중소기업 기술 보호 종합대책('16.4)'을 마련하여 지재권 보호 정책기반 조성
- 설명자료(논문·연구노트 등)만으로도 아이디어를 신속히 보호할 수 있도록 특허출원 형식요건 완화(특허법 개정, '14.6)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 도입('13.4), '직무발명 보상제도 활성화 방안('13.11)' 추진으로 정당한 발명 보상문화 확산

<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건수 >



< 직무발명 보상제도 도입기업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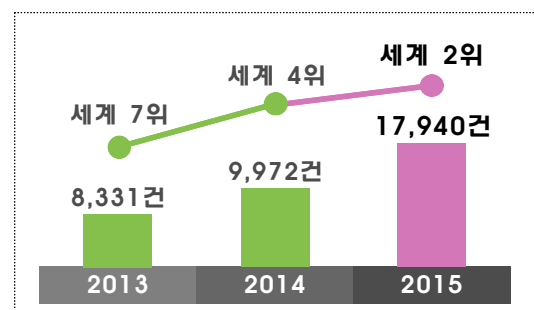


□ (해외 IP 보호) 해외에서의 지식재산 분쟁대응 지원 강화

- 중국 등 FTA 시대에 대비하여 K(한국)-브랜드 보호를 강화하고, 수출기업에 대한 지식재산 분쟁대응 종합 지원체계 구축

* 분쟁 컨설팅(건) : ('13) 128 → ('16) 487
소송보험(社) : ('13) 50 → ('16) 220

< 중국내 우리나라 상표출원 현황 >



- 현지 지원 강화를 위해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확대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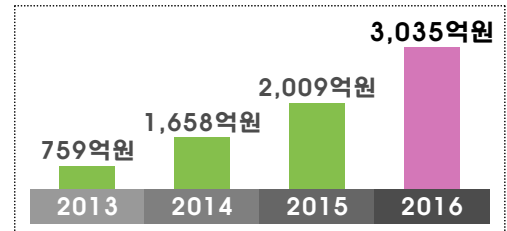
* ('13) 4개국(중국·미국·베트남·태국) 9개소 → ('16) 6개국(독일·일본 추가) 12개소

지식재산 활용 촉진

□ (IP 금융) 우수 지식재산 보유 중소기업에 자금 지원 확대

- IP 가치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투·융자 지원을 강화하고, 신뢰성 있는 가치평가 모델을 개발하는 등 IP 금융 활성화

< IP 금융 지원 현황 >



- 모태펀드 특허계정으로 IP 투자펀드를 조성하여 우수특허 사업화·거래 및 지식재산 서비스기업 성장 지원

* 산업은행 협력펀드(450억원) 등 최근 4년간 총 3,760억원 조성

□ (IP 거래·사업화) 지식재산의 거래·사업화 촉진 기반 조성

- 특허거래전문관*을 지역별로 확대 배치하고('13) 6명 → ('16) 17명), 공급자·수요자가 함께 참여하는 기술분야별 IP 활용 네트워크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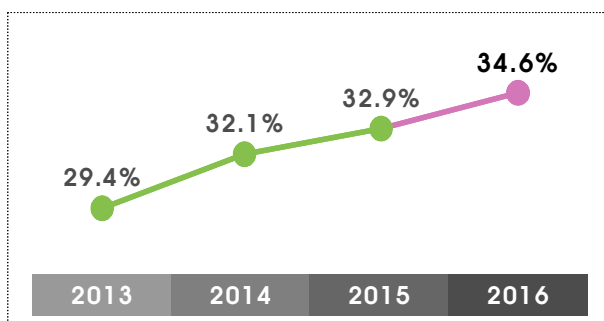
* 기술거래(건) / 기술료(억원) : ('13) 153 / 104 → ('16) 222 / 209

-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특허를 무상이전하는 경우 특허료 감면('15.11), 부가세 면제('16.2) 등의 혜택으로 특허개방 및 이전 촉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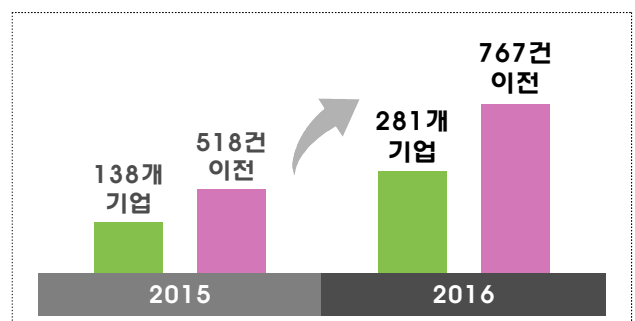
- 기술취득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직무발명 보상금의 비과세 대상 확대** 등 지식재산 세제개편('16.12)

* (중소) 7% → 10%, (대·중견) 5% 신설 ** 등록 보상 → 등록·실시·처분 등 보상

< 대학·공공연 특허 활용률 >



< 개방특허 이전 현황 >



Ⅲ. 2017년도 정책여건 및 추진방향

1 2017년도 정책여건

□ (주요국 동향) 4차 산업혁명 도래로 인공지능·사물인터넷 등 핵심기술에 대한 지식재산 확보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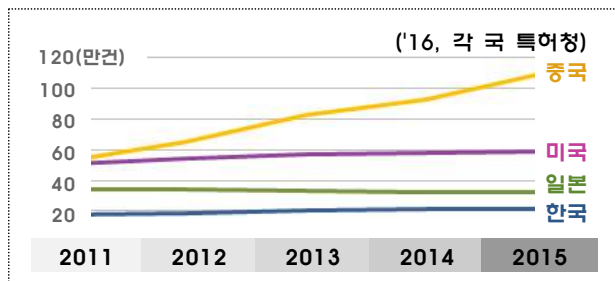
○ 주요 경쟁국은 자국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신시장 선점을 지원하기 위해 범국가적인 지식재산 정책 추진

* (미국) 제3차 IP 집행 공동 전략계획('16), (일본) 지적재산 추진계획('16)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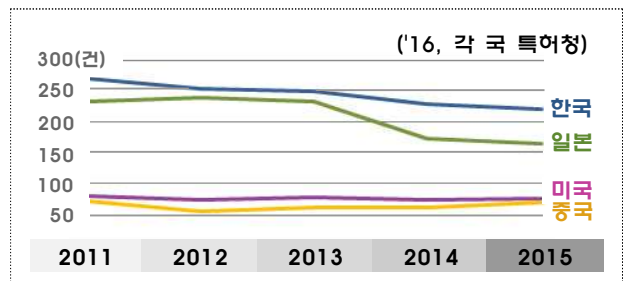
○ 고품질의 심사 서비스를 위해 지속적인 심사인력 증원*으로 1인당 처리건수를 적정화하고, 국가 간 심사공조 확대

* 인력 증원('13~'15) : (중국) 3,699명(총 10,258명), (미국) 1,146명(총 8,977명)

< 주요국 특허출원 건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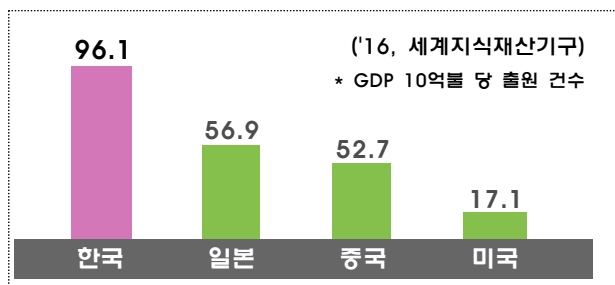
< 심사관 1인당 특허심사 처리건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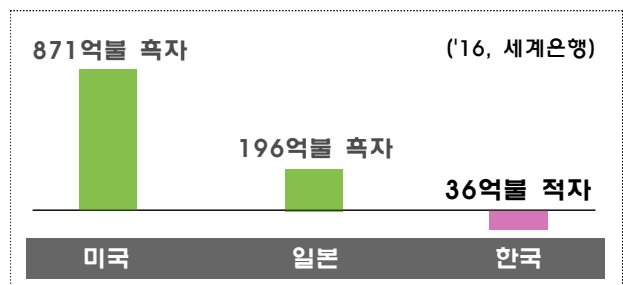
□ (지식재산 창출)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관련 양적 지표는 세계적 수준이나, 질적 수준은 주요 경쟁국에 비해 미흡

○ R&D 투자 증가로 지식재산 창출 역량은 크게 제고되었으나, 원천기술과 핵심특허 부족으로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지는 적자

< GDP 대비 내국인 특허출원 건수 ('1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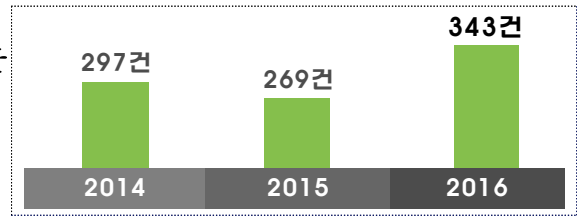
<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지 ('15) >



□ **(지식재산 보호)** 해외에서 우리기업에 대한 지식재산권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국내 위조상품의 피해는 여전히 심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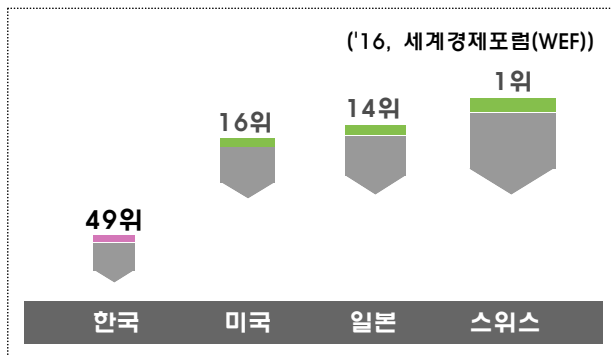
- 국내외 지식재산권 분쟁으로 인한 수출중단, 소송비용 증가는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 진출에 장애물로 작용

< 해외진출 우리기업의 IP-DESK 피침해 신고·상담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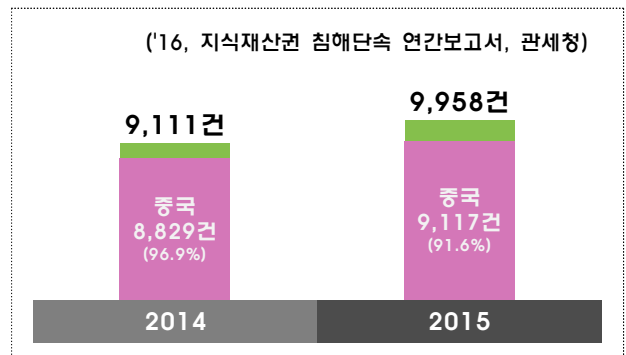


- 우리나라는 주요국에 비해 지식재산권 보호 환경이 여전히 취약하고, 중국 등 해외로부터의 위조상품의 국내 유입이 증가

< 주요국 지식재산권 보호 순위 ('1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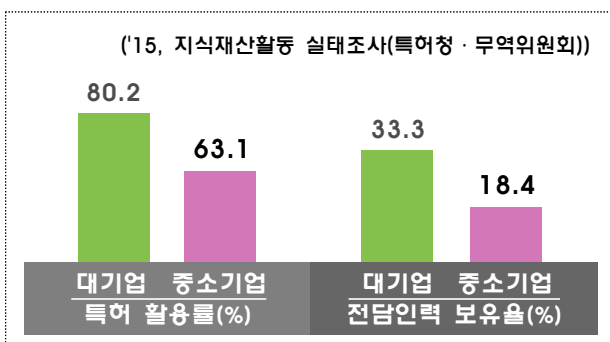
< 수입 통관단계 위조상품 적발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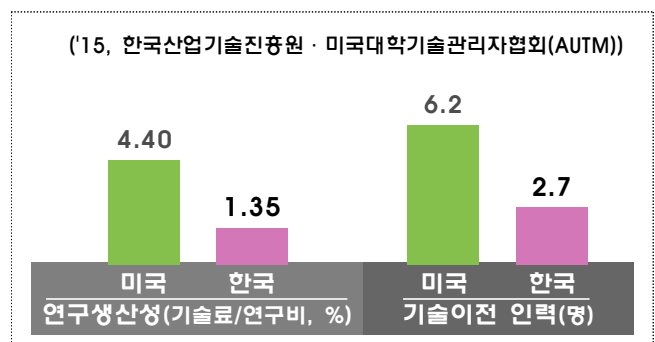
□ **(지식재산 활용)** 중소기업 및 대학·공공연의 지식재산 활용 저조

- 중소기업은 지식재산을 사업화하기 위한 자금과 인력 등이 부족하여 지식재산 활용 미흡
- 대학·공공연은 실적평가용 특허출원 관행과 기술이전 전담 인력 부족 등으로 지식재산을 통한 수익 창출 저조

< 기업의 특허 활용률 및 IP 전담인력 ('15) >



< 대학·공공연 연구생산성 및 기술이전 인력 ('14) >



비전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국가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목표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체계 선진화

추진전략

중점 추진과제

1

신뢰받는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

- 1 고품질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
- 2 고객 지향의 지식재산 제도 구축
- 3 지식재산 행정서비스 품질 제고

2

지식재산으로
새로운 시장 및
일자리 창출

- 1 원천·표준 특허 창출 지원
- 2 지식재산 기반의 창조기업 육성
- 3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 및 기술이전 촉진

3

지식재산 보호
강화를 통한
기업 혁신 지원

- 1 중소·벤처기업의 아이디어·기술 보호 강화
- 2 지식재산 보호 집행력 제고
- 3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대응 지원

4

미래를 준비하는
지식재산 생태환경
조성

- 1 생애주기별 지식재산 교육체계 구축
- 2 신기술 출현에 대비한 지식재산 체계 정비
- 3 글로벌 지식재산 협력 확대

IV.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

전략 1 신뢰받는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

현 황

- ❖ 심사·심판관 1인당 처리건수 과다로 심사·심판품질 저하 우려
 - * 1인당 특허심사 처리현황(건, '15) : (한) 221, (일) 164, (미) 73, (유럽) 57
- ❖ 미국·일본 등 주요국은 부실특허를 방지하기 위해 특허등록 초기에 특허를 재검증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운영 중
 - * (미국) 결정계(Ex Parte) 재심사 제도, (일본·유럽) 특허 이의신청 제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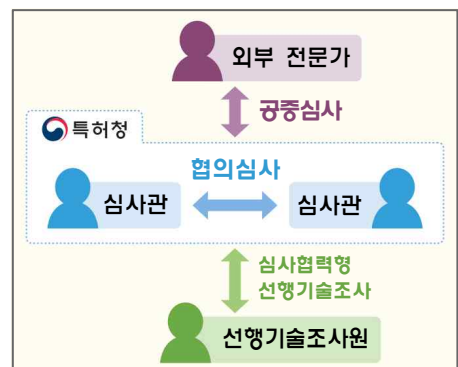
1 고품질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

- ◆ 심사·심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산업현장의 전문가, 조사원 등과 협력하여 심사·심판 서비스 품질 제고

□ 심사품질 제고를 위한 소통형 심사협력 강화

- 인공지능·사물인터넷 등 융·복합 기술을 중심으로 전문분야가 다른 심사관 간 협의심사 활성화
- 산업 현장과 소통하여 현장의 기술자료 및 업계 실정을 심사에 활용하는 공중심사 확대

< 소통형 심사협력 체계 >



- 선행기술조사원이 심사관과 대면하여 선행기술과 등록여부에 관한 검토의견까지 제시하는 심사협력형 선행기술조사 강화

* 전체 조사 대비 심사협력형 조사 비율(%) : ('15) 30 → ('16) 60 → ('17) 70

□ 심사·심판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고품질 서비스 제공

- 1인당 심사·심판 처리건수를 적정화*하기 위해 심사·심판 인력을 지속적으로 증원하고, 인력 운용 효율화

* 1인당 특허심사 처리건수(건) : ('16) 217 → ('17) 200 → ('18) 190

- 심판 전문관 지정을 확대하고, 경력기준 상향 등 심판관 자격 요건을 강화하여 심판의 전문성 제고
- 4차 산업혁명 관련 주요 기술 세미나, 산업현장 방문 및 현장 전문가 초청 등 최신 트렌드에 맞춘 현장 중심의 전문교육 추진

□ 심사지원사업 효율화를 통한 고품질 심사기반 강화

- 전문성 있는 신규기관의 참여를 확대하고, 품질경쟁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등록제 시행
- 조사원 자격시험을 민간 전문 자격시험과 연계*하고, 조사원 수준별 맞춤형 교육 과정을 도입하는 등 조사원 역량 강화

*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주관 'IP 정보검색사' 자격증에 전문가 등급 신설

□ 심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주요국 간 심사공조 확대

- 미국과 시행 중인 특허 공동심사(CSP³⁾)를 중국 등으로 확대하고, 외국 특허청과 PCT⁴⁾ 협력심사(CS&E⁵⁾) 신규 추진
- 주요국의 특허·상표 심사동향을 비교·분석하여 심사에 활용하고, 국내 기업에 그 결과를 제공하여 해외 지재산 획득 지원

* 미국·일본·유럽 등 주요국의 심사기준, 심사과정 및 결과 등 심층 분석

3) Collaborative Search Program : 출원인이 우리나라와 미국에 동일한 발명을 출원한 후 공동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심사에 필요한 선행기술정보를 양국 심사관이 공유하고 다른 출원 건보다 빨리 처리해주는 국가 간 심사협력 프로그램('15.9.1 시행)

4) Patent Cooperation Treaty(특허협력조약) : 해외 특허출원 절차의 간소화와 통일화를 위한 조약으로, 하나의 출원에 의해 조약가입국 151개국에 특허출원 효과 발생

5) Collaborative Search & Examination : 외국 특허청과 공동으로 PCT 국제조사를 수행하는 제도

◆ 권리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출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지식재산권 관련 제도 개선

□ 부실특허 방지와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한 특허제도 개선

- 빠르고 간편하게 특허를 재검증할 수 있도록 약식심판 형태의 특허취소신청제도* 시행('17.3.1)

* 누구나 특허공고 후 6개월 내 특허심판원에 특허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

- 기업 등 분쟁 당사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국제적 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분쟁해결제도의 합리적 개선 추진

□ 출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디자인 제도 마련

- 디자인 공지 후 창작자가 시장 상황에 따라 출원시기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신규성상실 예외주장* 기간 연장(6 → 12개월)

* 디자인이 출원 전에 공지되었더라도 최초 공지일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출원하면,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는 것으로 의제하는 예외규정

- 개별국에 직접 서면으로만 제출 가능한 우선권주장 증명서류를 전자적으로도 제출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추진

□ 국제추세를 반영한 지식재산권 분류제도 개선

- IP5⁶⁾ 국가와 공동으로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새롭게 출현하는 기술에 대한 신규 특허분류 부여 추진
- TM5⁶⁾ 국가와 상품 분류제도를 비교·분석하여 상품의 속성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상품 분류기준 정비

6) IP5(Intellectual Property 5), TM5(Trade Mark 5) : 전 세계 특허·상표 출원을 주도하는 한국·미국·중국·일본·유럽의 5개 특허·상표청

◆ 특허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대민 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여
고객 중심의 지식재산 행정서비스 제공

□ 특허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신뢰성 제고

- 통지서·심결문 오류 자동점검 시스템 개선 등 고품질 심사·심판을 지원하기 위한 스마트 심사시스템 고도화
- 선행기술문헌을 보다 더 정확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표준문서·비특허문헌 등 검색 데이터를 확충하고, 검색기능 개선
- 정보보안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사이버위기 대응훈련을 실시하고,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교육 강화

□ 지식재산정보의 개방·공유 확대

- 지식재산정보 서비스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자 및 신생기업(3년 미만)에게 IP 데이터 무상 개방
- 민간의 지식재산정보 활용 촉진을 위해 중국특허의 기계번역 품질을 제고하고, 특허 인용·피인용 정보 검색서비스 제공

□ 대국민 지식재산 서비스 품질 제고

- 신속·정확·공정한 민원처리 체계 구축을 위해 민원관련 규정을 통합한 ‘민원처리에 관한 규정(훈령)’ 제정 추진
- PCT 국제특허 출원인이 별도의 출원 SW 설치 없이 웹상에서 직접 국제특허 출원할 수 있도록 PCT 출원방식 다양화
- 전자출원사이트(특허路)의 웹브라우저 호환성을 개선*하고, 특허청 및 산하기관에서 운영 중인 홈페이지를 단계적으로 통·폐합

* Internet Explorer 이외의 Chrome, Firefox 등 웹브라우저에서도 전자출원 가능

현 황

❖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핵심분야(인공지능·사물인터넷 등)의 지식재산 경쟁력은 미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부족

* 인공지능 등록특허(건, '76~'14) : (미) 9,171, (일) 1,965, (독) 446, (한) 197

❖ 초기 기술혁신형 스타트업은 기술개발 후 IP 창출 및 활용 전략이 미흡하고, 사업화 자금이 부족하여 창업 성공 가능성이 저조

* 창업 5년 후 기업 생존율('13, %) : (프) 52.7, (독) 41.0, (영) 37.5, (한) 29.0

1 원천·표준 특허 창출 지원

◆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핵심분야에서 고부가가치 특허를 창출하기 위해 IP-R&D 연계 전략 지원 강화

□ 정부 R&D를 통한 고품질 특허 창출

○ 4차 산업혁명 핵심분야에 특허동향조사를 집중 지원하고, R&D 부처의 자체 특허동향조사 확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

* 특허동향조사 표준 매뉴얼 개발·보급, 관련규정 정비, R&D 전문가 교육 등

○ 공공연의 중소기업 수요기술에 대한 우수특허 창출을 지원하고, 타 부처 기술이전·사업화 사업과 후속 연계 추진

* 공공연과 공동으로 기업 주문형 특허기술개발 'IP-Dream Lab' 프로젝트 추진

○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대형 R&D 사업에 특허전문가* 제도를 시범 도입하고, R&D 직접비로 IP-R&D 비용 계상을 허용토록 제도 개선

* 매년 10억 이상의 R&D 과제 대상으로 CPO(Chief Patent Officer) 제도 신설

○ 중국의 부상과 기술발전을 고려하여 중국 특허에 대한 분석을 추가함으로써 전략적 R&D 방향 설정 및 특허분쟁 예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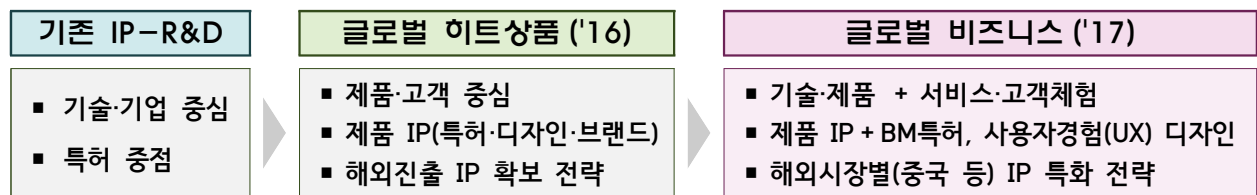
□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IP-R&D 연계 전략 지원 확대

- 4차 산업혁명 핵심분야에 대한 IP-R&D 연계 전략을 중점 지원*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신성장동력 발굴 및 혁신 역량 강화

*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 산업부·미래부 8대 스마트기술 등과 연계 지원

- 기술·제품 뿐만 아니라 서비스 등 고객이 체험하는 모든 유·무형 요소까지 고려하는 비즈니스 관점으로 'IP 종합지원' 확대

< 'IP 종합지원' 전략의 고도화 방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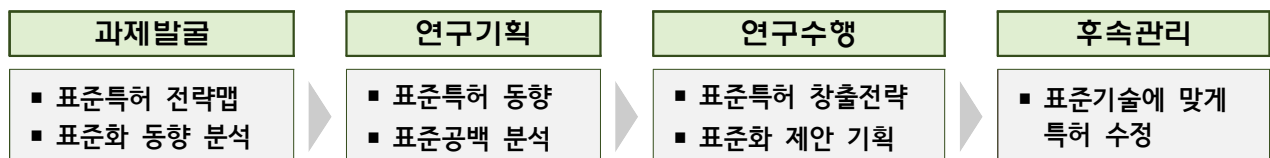


- IP-R&D 지원 사례들을 대상·유형별로 집대성한 '특허전략 사례 100선'을 발간하여 IP-R&D 연계 전략의 효과적인 민간 확산 추진

□ 표준특허 창출 역량 강화

- R&D 전 과정에서 'R&D-특허-표준화' 연계체계 강화

< 'R&D-특허-표준화' 연계를 위한 R&D 단계별 지원 내용 >



- 우수기술 보유 중소기업이 표준특허 관련 제반 역량을 확보하여 강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스텝-업 프로그램*' 신설

* R&D 방향성, 표준화 일반 전략, 표준특허 전략을 패키지로 일괄 지원

- 연구개발·표준화 단계를 고려한 핵심 표준특허 확보전략을 개발·보급하여 산·학·연의 표준특허 창출역량 증대

		연구개발 초기	연구개발 후기
표준화	초기	긴급출원, 표준아이템 도출, 표준화 방향 설정	표준특허망 구축, 표준기술구현 특허설계
	후기	표준기술 공백영역 도출, 권리범위 안정화	특허 재설계, 권리범위 보완, 특허풀 지분확대

2 지식재산 기반의 창조기업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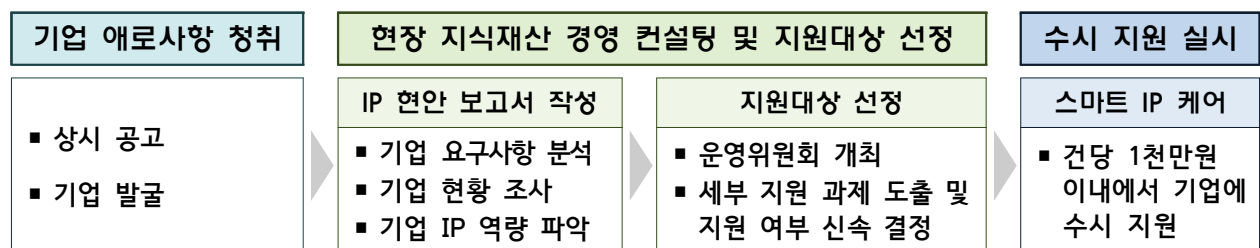
◆ 중소기업의 IP 수요에 따른 맞춤형·적기 지원을 강화하고, 법령·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의 지식재산 경영 기반 확충

□ 중소기업 IP 애로 실시간 지원 체계 마련

○ 'IP 경영지원단'⁷⁾이 중소기업의 IP 애로사항을 상시 발굴하고, 직접 방문하여 지원하는 실시간 현장밀착 지원체계 구축

* 지원건별로 수행기관을 선발하던 방식에서 사전에 수행기관 풀을 구성하여 풀 내에서 선정하는 방식으로 개편하여 신속히 기업 지원 가능

< 'IP 경영지원단' 지원 체계도 >



○ 스타트업이 필요한 시기에 다양한 IP 서비스*를 적시에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특허바우처'⁸⁾ 도입 추진

* 국내외 특허 권리화, 특허맵, IP-R&D 연계 전략, 특허기술 가치평가 등

□ 해외 진출 촉진을 위한 글로벌 IP 기업 집중 육성

○ 수출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글로벌 IP 기업으로 선정하고, 해외출원 지원 등 기업 수요에 부응하는 신규 맞춤 지원

* '17년 수출(예정) 중소기업 570개 선정(舊 IP 스타기업 320개 포함)

○ 기업의 외국환 거래실적*, 보유 특허 및 R&D 정보를 연계 분석하여 해외 진출기업의 중장기 지식재산 전략 수립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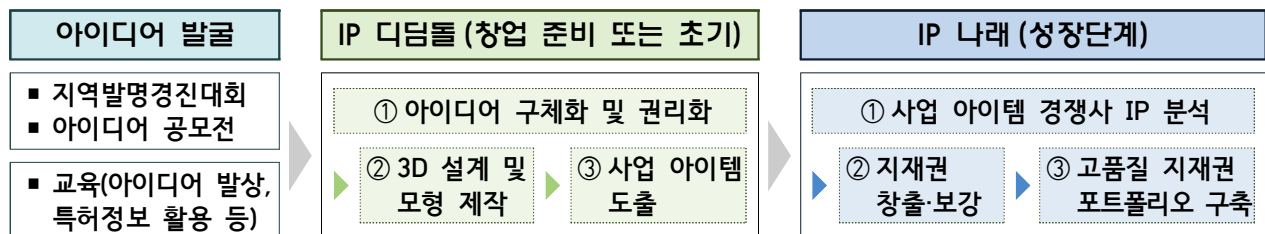
* 발명진흥법 개정을 통해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 거래정보 확보 추진

7) 지역지식재산센터(RIPC)의 특허·브랜드·디자인 전문 컨설턴트 70여명으로 구성

8) 정부가 수요자에게 쿠폰(바우처, Voucher)을 지급한 후 수요자가 자유로이 IP 서비스를 선택하여 지원받고, 추후 IP 서비스를 제공한 공급자가 바우처를 제시하면 정부가 재정을 지원

- 혁신형 창업 촉진을 위한 지식재산 기반 창업 지원체계 구축
 - 아이디어 발굴에서 창업 준비 또는 초기, 성장단계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하여 지식재산 기반 창업 촉진
 - 지역별로 IP 창업 촉진 거점을 마련하여, 손쉽게 아이디어를 사업아이템으로 도출할 수 있도록 'IP 디딤돌 프로그램' 도입
 - IP 전략 없이 창업에 뛰어들어 스타트업의 생존율을 제고하기 위해 창업기업 특화형 컨설팅을 실시하는 'IP 나래 프로그램' 추진

< IP 기반 창업 지원 체계 >



□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 경영 촉진

- 지식재산 관련 비용*을 '先대여 後장기 분할상환' 방식으로 지원하여 기업의 비용부담을 분산·완화하는 '특허공제 사업⁹⁾' 도입

* 해외출원, 국내외 산업재산권 관련 심판·소송, 특허보증, 특허기술 가치평가 등

- 정부가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영능력을 보증하는 'IP 경영 인증 기업' 지정 확대

* IP 경영 인증 기업(社, 누적) : ('16) 50 → ('17) 150

- 특허비용 세액공제 확대, 기술이전 과세특례 개선 등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 활동 기반 강화를 위한 세제개선 추진

* 출원·등록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기술이전·대여소득 세액감면 대상 확대

- 직무발명 예약승계 규정이 있는 경우 발명 완성시 회사가 자동 승계하고, 직무발명 규정의 적용대상을 식물신품종까지 확대

9) 가입자가 매월 납입하는 공제부금은 복리로 적립하고, 적립된 원리금은 공제계약 해지 시 지급 가능하며, 공제사유 발생 시 관련 비용을 先대여 받아 5년간 무이자 분할 상환

- ◆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확대 등 지식재산 금융을 활성화하고, 대학·공공연 등의 우수 특허기술 거래 및 사업화 촉진

□ 민간 중심의 IP 금융 저변 확산 및 인프라 확충

- 기술보증기금의 IP 가치평가 보증서를 기반으로 대출금리를 우대하는 '우수 IP 보유기업 전용 대출상품' 출시 지원

* IP 금융 취급은행 : ('16) 산업·기업·국민은행 → ('17) 신한·우리·하나은행 추가

< '우수 IP 보유기업 전용 대출상품' 체계도 >

기존 IP 보증 기반 대출('16)			우수 IP 보유기업 전용 대출('17)		
특허청	기술보증기금	일반은행	특허청	기술보증기금	협약은행
■ IP 가치평가 비용 지원	■ IP 가치평가 ■ 보증서 발급	■ 보증 기반 담보대출	■ IP 가치평가 비용 지원	■ IP 가치평가 ■ 보증서 발급	■ IP 보유기업 금리우대 대출

- IP 가치평가기관을 금융권·민간기관으로 확대*하고, 금융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민간의 IP 금융 역량 제고

* ('16) 13개 기관(금융 2개, 민간 3개) → ('17) 17개 기관(금융 4개, 민간 5개)

- 특허청 IP 가치평가기관과 산업부 등 타 부처 기술평가기관 간 평가기법 공유 등 기술·IP 가치평가 협력체계 구축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17 상반기 예정)에 따라 특허청 IP 가치평가기관도 동 법률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에 포함될 예정

□ 우수특허 보유 스타트업 등에 대한 IP 투자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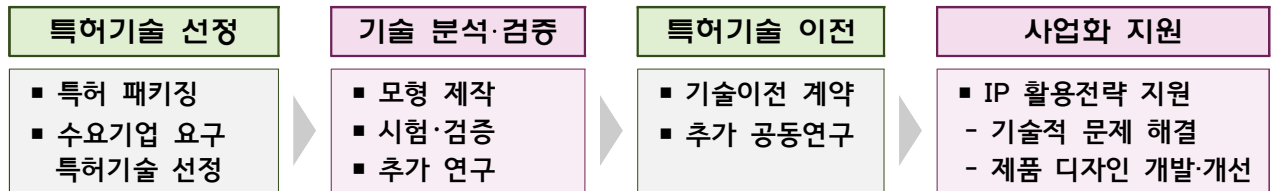
- 창업 초기에는 모태펀드를 통한 IP 투자, 일정 매출 발생 이후 IP 보증·대출·후속 투자 등 성장단계별 IP 금융지원 체계화

* 스타트업 IP 가치평가 펀드, 공공기술사업화 펀드 등 600억원 규모의 4개 펀드 조성

- IP 투자시 가치평가를 강화하고, IP 사업화·거래 등과 연계한 IP 전문 투자펀드를 조성하여 IP 투자시장 확대

□ 시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대학·공공연의 우수 IP 활용성 제고

- 대학·공공연 특허가 민간에서 상용화될 수 있도록 수요기업 요구에 따른 '기술 분석·검증' 및 '사업화 지원' 절차 추가 도입



- 출원 전 기업의 구체적인 수요가 있는 발명에 대해 예비 수요 분석·기술마케팅을 지원하는 수요 기반형 발명인터뷰 도입
- 대학·공공연 보유특허를 분석·평가하여 시장성이 있는 특허를 유지하도록 유도하고, 활용 가능성이 높은 특허는 거래 지원

* 공공기관 보유특허 진단지원 기관(개) : ('16) 10 → ('17) 15

□ 수요·공급 매칭을 통한 IP 거래 활성화

- 유망 기술분야별 IP 활용 네트워크(IPLUG)를 확대하고, 특허 거래전문관·민간거래회사 등을 통한 특허기술 이전 지원

* 기술분야별 IPLUG : ('16) 사물인터넷 등 6개 분야 → ('17) 로봇 등 8개 분야

- 특허거래전문관이 보유한 수요기업·유망기술 등 주요 거래 정보를 민간에 개방하여 민간거래회사의 역량 강화
- 출원시 특허 거래 의사를 표시한 특허권자에게 주기적인 특허 분석평가시스템(SMART3) 분석 및 거래 지원

□ 지식재산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 ID社¹⁰⁾ 운영을 정부 출연에서 민간펀드 투자 유치로 전환하고, IP 라이선싱, 소송 등 사업 구조 개편을 통해 전문성 제고
- 지식재산 서비스업체의 해외현지 마케팅 지원 및 KOTRA 등 유관기관 협력을 위해 'IP 서비스 해외진출 협의체' 구축

10) Intellectual Discovery : 해외 특허공세로부터 국내 기업을 보호하고 지식재산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 민관합동 출연금 형태로 설립('10.7)된 특허관리 전문회사

현 황

❖ 기술유출·탈취가 빈번하고, 온·오프라인 거래시장에서 위조상품 유통이 근절되지 않는 등 지식재산 침해가 만연

* 기술유출범죄 검찰 처리현황(건) : ('13) 459 → ('14) 412 → ('15) 467

* 상표권 특사경 단속 위조상품 정품가액(억원) : ('13) 567 → ('14) 881 → ('15) 977

❖ 한류 확산으로 해외에서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분쟁대응 역량은 여전히 미흡

* 중국 상표브로커로 의심되는 46개 개인·업체가 1,232개 한국상표 무단선점('16.12)

1

중소·벤처기업의 아이디어·기술 보호 강화

◆ 아이디어 탈취 행위 등 부정경쟁행위 규율 대상을 확대하고, 침해 구제의 실효성 제고 및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 부정경쟁행위 규율 대상을 확대하여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

○ 부정경쟁행위를 포괄적으로 정의*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롭게 나타날 수 있는 행위유형에 대한 선제적 보호

* 부정경쟁행위 유형을 개별적으로 열거하는 현행 체계에서 '포괄적 정의 및 예시 조항' 체계로 전환하여 신규 유형에 대한 확장성 및 유연성 확보

○ 다양한 비즈니스, 거래관계, 공모전 등에서 발생하는 '아이디어 탈취·사용 행위'를 부정경쟁 행위유형으로 신설 추진

* '아이디어 탈취·사용 행위'에 대한 민사구제(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등) 가능

○ 트레이드 드레스¹¹⁾의 보호 요건을 완화하여, 프랜차이즈 등의 특징적인 외관을 모방하여 오인·혼동을 유발하는 행위 금지

11)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 : 물건이나 서비스의 전체적인 이미지로서, 물품의 크기, 형상,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 소재, 도형, 설계, 광고주제 등을 포함하는 다수의 상이한 물리적 형태 등으로 구성된 것

□ 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행정·사법적 구제 강화

-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체계에 '과태료 부과'를 추가하여 신속한 피해자 구제 및 위반 경중에 따른 적정 제재 추진

* (중국) '주지 상표 혼동 행위 등'에 대해 과태료 부과('16 개정안)

- 영업비밀을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강화

* 벌금 상한액을 증액하고, 영업비밀 반환요구 거부 등을 처벌대상에 포함

- 사실상 동일한 복제 수준의 형태모방(Dead Copy)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규정을 도입하여 무분별한 디자인 도용 방지

* '04년 형태모방 행위를 규제하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자목이 도입되었으나, 금지청구·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적 구제만 가능하여 그 실효성에 한계

□ 효과적인 분쟁해결을 위한 지식재산권 보호 인프라 확충

-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설치, 조정위원 풀 확대*, 1인 조정부 도입 등 운영 효율화 및 분쟁조정 활성화

* 현재 40명에서 80명(상표·디자인 / 기계 / 화학 / 전기 각 20명)으로 확대

- 특허 등 산업재산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한 업종별 실시료 DB 구축, 국내외 판례 분석 및 산정기준 마련

□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보호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효율화

- 영업비밀 보호관리시스템을 해외 현지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하고, 국내외 보급 확대 추진

- 지재권 권리자의 권리남용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해 공익변리사 직접대리 지원

* 권리남용에 대한 판단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상표권 및 디자인권에 대해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및 그 심결취소소송에 한정하여 지원

◆ 상표권 특사경의 위조상품 단속을 강화하고, 지식재산 보호 집행 강화를 위한 조직·제도 정비와 인식제고 활동 확대

□ 위조상품 유통 근절을 위한 상표권 특사경 단속 강화

- 국내 유관기관 및 중국 당국과 협력하여 중국에 도피한 상표권 침해 사범을 단속하고, 중국 현지 생산자 추적·단속
- 수입 통관단계에서 관세청과 수사공조를 확대하고, 상습판매 지역은 경찰청·지자체와 합동 수사하는 등 국내 단속활동 강화

□ 지식재산 보호 집행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 및 제도 정비

- 위조상품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특사경 조직을 확대*하고, 최신 경찰수사 장비를 도입하는 등 수사 환경 개선 추진

* (지역사무소) 대구·광주 2개소 증설 / (수사 인력) 10명 증원

- 실효성 있는 위조상품 단속 지원을 위해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여 지재권 집행력 강화
- 지재권 허위표시에 대한 기획조사 및 집중 계도를 실시하고, 온라인 쇼핑몰 업체와 허위표시 방지협력 체계* 구축

* 허위표시 신고건에 대해 온라인 쇼핑몰 업체가 자체 시정하도록 조치

□ 참여형 프로그램 확대 등을 통해 지식재산 보호 인식 제고

- 공모전, 발명·보호 체험교육 등 참여형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국민이 능동적으로 준법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
- 기술탈취 및 위조상품 유통 근절을 위한 공익광고, 온라인 커뮤니티 홍보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한 지식재산 존중문화 조성

◆ 수출기업의 지재권 보호를 위해 현지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한류 지재권 보호와 분쟁대응 컨설팅 확대

□ 해외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체계 강화

○ IP-DESK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위조상품 유통경로, 침해조사 업체 등의 정보를 기업에 제공하여 현지 침해단속 성과 제고

* 중국(상해·광주·청도), 베트남 및 독일에 전문인력(변호사·변리사 등) 확충

○ 해외 진출시 발생 가능한 다양한 분쟁양상에 적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사업간 연계를 강화*하여 지원사업의 실효성 확보

* IP-DESK 운영, 분쟁예방 컨설팅, IP 소송보험 등 관련사업 패키지 지원

□ 한류 관련 해외 지식재산권의 선제적 보호 추진

○ 방송사 한류 드라마, 예능 프로 등 한류 콘텐츠 기획 단계에서 사전 IP 보호 체계를 구축하여 선제적인 한류 IP 보호 추진

○ K-브랜드를 모방한 악의적 무단 선점 의심상표를 현지 출원 단계에서 모니터링하여 피해기업이 조기 대응하도록 지원

○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모니터링 대상 오픈마켓을 확대*하는 등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단속 강화

* ‘알리바바’ 이외에 중국 온라인 2위 마켓인 ‘징둥닷컴’ 등으로 확대

□ 해외 진출기업의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력 제고

○ 다년도 보장이 가능한 중장기 지재권 소송보험을 개발하고, 지자체·기업단체 매칭을 통해 IP 소송보험 활성화

○ PM(Project Manager) 제도 운영, 현지 로펌 연계 강화 등 분쟁 예방 컨설팅 지원체계를 개선하여 사업의 내실화 도모

현 황

❖ 창의력을 갖춘 지식재산 인재 양성을 위한 초·중·고, 대학(원), 기업 등의 체계적인 발명·지식재산 교육 여건이 열악

* 초·중·고 학생의 발명교육 참여 비율이 전체 학생 중 4%이며, 이공계 대학(원) 재학생의 지식재산 강좌 이수 비율은 2.9%에 불과('15)

❖ 인공지능의 창작 활동이 가능해지는 등 신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지식재산 관련 법적·제도적 검토는 미흡

1

생애주기별 지식재산 교육체계 구축

◆ **全 국민이 체계적인 발명·지식재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충하여 지식재산에 강한 미래 창의인재 육성**

□ 발명교육 확산을 통한 창의적 지식재산 인재 양성

○ 발명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발명교육활성화지원법’ 제정을 지원하고, 발명교육센터* 현대화 및 추가설치 추진

* '95년부터 설립되어 지역별로 총 199개 발명교육센터 운영 중('16년말 기준)

○ 고등학교의 ‘지식재산일반’ 교과목 채택을 확산하기 위해 시·도 교육청 등과 협력하여 교과서 집필, 교원 연수 및 홍보 실시

* 교과서 집필(~'17.1) → 교과서 인증('17.8) → 채택학교 결정('17.10) → 시행('18~)

○ 발명교육센터와 IP 강소기업·연구소 등을 매칭하여 가상현실 등 융·복합 기술을 중심으로 체험형 발명·지식재산 교육 실시

○ 지역발명경진대회, 지역 특성화산업 및 국가안전 관련 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통해 아이디어 창출 저변 확대

* 충북 바이오 스타트업 공모전, 해경발명대전, 군장병 발명경진대회 등

□ 대학(원)의 지식재산 교육기반 확충 및 교육 내실화

-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에 ‘지식재산교육 인증트랙’^{*}을 도입하고, 지식재산 복수학위제 신설·운영(2개교) 추진

* 일정 학점 이상 지식재산 교육을 이수하면 졸업장 등에 명시하거나 인증서 수여

- 교육부·공학교육인증원·공과대학장협의회 등과 협의하여 공학 인증 기준 및 대학평가 등에 지식재산교육 반영 추진

- 대학과 업무협력을 통해 지식재산학 학점은행제를 지속적으로 확산하고, 실무중심의 학점은행제 운영과목 확대

* 총남대·전북대·산기대 등 총 8개 대학이 지식재산학 학점은행제 운영('16)

□ 산업현장의 요구에 부응한 지식재산 실무인력 양성

- 발명·특허 특성화고에 ‘지식재산일반’ 과목을 시범 적용하고, 지역기업과 연계한 교육^{*}을 통한 실무능력 향상과 취업률 제고

* 기업 현안을 학생이 발명을 통해 해결하고, 기업은 학생에게 채용 기회 제공

- 지식재산 교육허브 참여 지자체를 추가(강원·대전 2개 → 1개 추가) 하고, IP-NCS¹²⁾ 기반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지역인재 양성

-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지식재산 분쟁예방 교육’을 개설하고, 산업단체와 협력하여 산업분야별 맞춤형 교육 추진

□ 변리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 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현장 맞춤형 실무수습^{*}을 실시하고, 변리사가 침해소송 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변리사법 개정 추진

* 산업재산권 출원 실무 등 집합교육(250시간) 및 현장연수(6개월)로 구성

- '18년 변리사 시험의 실무형 문제 도입에 따른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특허청 경력자의 변리사 시험 일부면제 제도 개선

12) IP-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국가직무능력표준) : 산업현장에서 지식재산 관련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기술·태도 등을 수준별로 체계화한 것

◆ 초연결·초지능 기반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신기술 영역을 지식재산으로 적절히 보호하기 위한 지식재산 법·제도 정비

□ 미래 환경변화에 대비한 선도적 지식재산 연구 강화

○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중장기 지식재산 제도 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국내외 지식재산 정책동향 연구 추진

○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제도적 보호 방안 등 신기술 발전에 따라 대두되는 지식재산권 이슈의 선제적 검토

* (일본) 차세대 지재시스템 검토위원회 보고서('16.4)에서 인공지능 창작물의 권리 보호, 3D 프린팅 및 빅데이터의 활용에 있어서 법적 문제 등 검토

○ 인공지능 등 신기술의 지재권 이슈에 대해 산업계·학계 등과 세미나, 국제 컨퍼런스 개최 등 국제적 논의 주도

* IP5 국가는 인공지능·사물인터넷 등 최근 부각되는 기술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협력을 모색하기로 합의('16.6)

□ 소프트웨어(SW) 관련 특허 보호 체계 개선

○ 특허기술이 포함된 SW의 온라인 유통(전송)도 침해행위에 포함하여 특허법에 의해 명확히 보호되도록 법령 개정 추진

* 현재는 특허기술이 포함된 프로그램을 기록매체(CD 등)로 무단 유통하면 특허침해에 해당되지만, 온라인 유통 행위가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불명확

○ 네트워크 환경에서 발생 가능한 다양한 특허 침해행위*에 대한 적절한 권리보호 방안 검토

* (국경을 넘는 침해) 해외 서버에서 특허침해 SW 서비스를 국내에 제공 (복수 주체 침해) 하나의 특허 SW를 여러 사람이 단계별로 나누어 실시

○ 일본 등 주요국과 SW 관련 특허심사 기준에 대한 논의 채널을 구축하고, 국제적 조화 방안 모색

◆ 양자·다자 협력을 전략적으로 추진하여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고, 우리기업의 해외 진출에 우호적인 환경 조성

□ 지식재산 선진 5개국 협의체를 통한 국제질서 변화 선도

- IP5 사용자 그룹 참여를 확대*하여 선진 5개국간 심사공조 등 IP5 협력과제의 진척을 촉진하고, 국제규범 논의 주도

* 'IP5 산업계 협의 그룹'을 신설하여 기존 그룹이 논의 중인 정보화 外 이슈 협의

- TM5·ID5¹³⁾ 국가와 공동으로 상표심사 품질관리, 디자인 등록 요건 비교·분석 등을 통해 심사품질 향상과 국제조화 추진

□ 중동·아세안 등 신흥시장과 전략적 협력 확대

- 아랍에미리트 특허심사협력 모델*을 기반으로 걸프협력기구¹⁴⁾·이란 등으로 특허행정 수출 대상국과 서비스 분야 확대 추진

* 특허심사 대행('14.2), 특허정보시스템 수출('16.2) 및 특허심사 조직설계 컨설팅('17)

- 한-아세안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아시아 특허청장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개별국 단위의 협력체제에서 다국가 협력체제로 전환

□ 우리기업에 우호적인 글로벌 지식재산 환경 구축

- 美 신정부 출범, 브렉시트 등 보호무역주의 확산, 신흥 거대 시장과의 FTA 등 환경변화에 대응한 지재산 통상 대책 수립

-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지역사무소* 유치를 추진하고, 국제 지식재산 나눔사업을 통해 개도국에 적정기술 보급 확대

* WIPO는 '17년 아프리카 2개, '19년까지 기타 지역 4개 지역사무소 신설 예정

13) ID5(Industrial Design 5) : 전 세계 디자인 출원을 주도하는 한국·미국·중국·일본·유럽의 5개 디자인청

14) 걸프협력기구(GCC : Gulf Cooperation Council) : 걸프만 연안 6개 산유국(바레인·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오만·카타르·쿠웨이트)이 역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결성한 지역협력기구

V. 분기별 추진계획

1

신뢰받는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

1 고품질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7년 특허·상표·디자인 심사 처리계획 수립·시행				
심판 전문관 지정 확대 등 심판의 전문성 강화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등록제 도입				
'17년 선행기술조사 사업계획 수립·시행				
한·중 특허 공동심사(CSP) 시행 논의				
특허·상표 심사동향 비교·분석 추진				

2 고객 지향의 지식재산 제도 구축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특허취소신청제도 시행				
분쟁 당사자의 부담 경감 등을 위한 분쟁해결제도 개선				
IP5 국가와 공동으로 신규 특허분류 부여 추진				
TM5 국가와 협력하여 상품 분류기준 정비				
출원인 편의 증진을 위한 디자인 제도 개선				

3 지식재산 행정서비스 품질 제고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스마트 심사시스템 고도화				
선행기술 검색 데이터 확충 등 검색시스템 개선				
특허 인용·피인용 정보 검색시스템 구축				
민원처리에 관한 규정 제정 추진				
전자출원사이트 웹브라우저 호환성 개선 추진				

1 원천·표준 특허 창출 지원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 정부 R&D 특허동향조사 지원 및 인프라 구축				
■ 4차 산업혁명 핵심분야 IP-R&D 연계 전략 지원				
■ IP-R&D 민간 확산을 위한 특허전략 사례 100선 발간				
■ R&D-특허-표준화 연계 체계 강화				
■ 중소기업 대상 스텝-업 프로그램 신설				

2 지식재산 기반의 창조기업 육성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 IP 경영지원단 중소기업 수시 지원 추진				
■ 글로벌 IP 기업 선정·지원				
■ IP 디딤돌·나래 프로그램 운영				
■ 특허공제 사업 추진				
■ 중소기업 IP 경영인증 지원시책 확대				
■ 특허비용 세액공제 확대 등 지식재산 세제 개선 추진				
■ 직무발명 제도 개선				

3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 및 기술이전 촉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 우수 IP 보유기업 전용 대출상품 출시				
■ 민간 IP 가치평가기관 확대 및 금융권 교육 강화				
■ IP 투자펀드 조성 등 성장단계별 IP 금융지원 체계화				
■ 특허거래 전후 기술 분석·검증 및 사업화 지원				
■ 수요 기반형 발명인터뷰 도입				
■ IP 활용 네트워크 확대 및 기술이전 지원				
■ 특허관리전문회사 전문성 제고				

1 중소·벤처기업의 아이디어·기술 보호 강화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 아이디어 탈취 금지 등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입법예고				
■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국회제출				
■ 영업비밀 보호관리시스템 기능 개선 및 보급 확대				
■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익변리사 직접대리 지원				
■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설치·운영				
■ 기술분야별 실시료 DB 확보 추진				

2 지식재산 보호 집행력 강화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 위조상품 역내·외 단속 실시				
■ 상표권 특사경 조직 확대 추진				
■ 보호원 법정기관화를 위한 발명진흥법 개정안 국회 제출				
■ 지재권 허위표시 기획조사 실시				
■ 온라인 쇼핑몰 업체와 허위표시 방지 협력 추진				
■ 공모전·공익광고 등 지식재산 존중문화 조성				

3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대응 지원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 IP-DESK 전문인력 확충				
■ 해외 IP 보호 관련 지원사업 연계 추진				
■ 한류 콘텐츠 IP 보호 체계 구축				
■ K-브랜드 무단선점 모니터링 및 조기대응 지원				
■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중장기 지재권 소송보험 개발				

1 생애주기별 지식재산 교육체계 구축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 발명교육센터 체험형 발명·지식재산 교육 실시				
■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 지식재산교육 인증트랙 도입·운영				
■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 지식재산 복수학위제 도입·운영				
■ 지식재산학 학점은행제 확산				
■ 지식재산 교육허브 참여 지자체 확대 운영				
■ 찾아가는 분쟁예방 및 산업분야별 맞춤형 교육 운영				
■ 변리사 대상 현장 맞춤형 실무수습 실시				
■ 변리사 시험 실무형 문제 가이드라인 마련				

2 신기술 출현에 대비한 지식재산 체계 정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지식재산권 정책 연구				
■ SW의 온라인 유통 보호를 위한 특허법 개정 추진				
■ SW 특허심사 기준 국제적 조화 추진				

3 글로벌 지식재산 협력 확대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 IP5·TM5·ID5 협력과제 추진				
■ 아랍에미리트 특허심사 조직 설계 컨설팅 실시				
■ 한-아세안 양해각서 체결 추진				
■ 지식재산권 통상 대책 수립·시행				
■ WIPO 지역사무소 유치 추진				
■ 국제 지식재산 나눔사업 계획 수립·시행				

〈붙임〉 소관 법률

◆ 특허법, 상표법, 발명진흥법 등 총 8개 법률

법률명	주요내용
특허법	○ 특허출원·심사, 특허요건, 특허권의 효력, 심판, 소송 등을 규정
실용신안법	○ 실용신안등록출원·심사, 실용신안등록요건, 실용신안권의 효력, 심판, 소송 등을 규정
상표법	○ 상표등록출원·심사, 상표등록요건, 상표권의 효력, 심판, 소송 등을 규정
디자인보호법	○ 디자인등록출원·심사, 디자인등록요건, 디자인권의 효력, 심판, 소송 등을 규정
발명진흥법	○ 발명의 진흥, 지역지식재산센터,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한국발명진흥회 설립근거 등을 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 부정경쟁행위(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 등의 부정사용 등) 방지와 영업비밀 보호 등을 규정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 배치설계권의 등록, 배치설계 심의조정위원회 등을 규정
변리사법	○ 변리사의 자격, 변리사 시험, 등록, 징계 등을 규정